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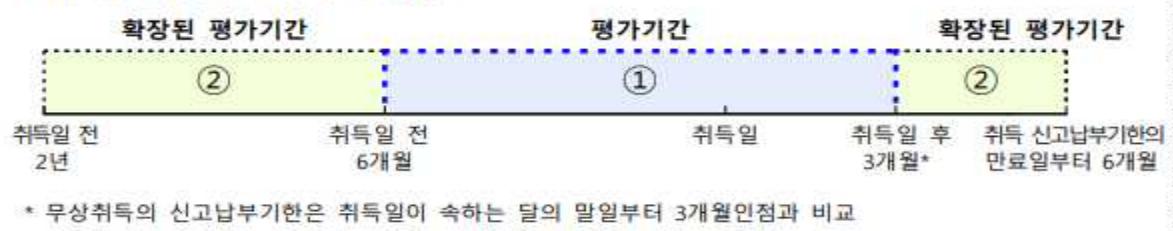
[1] 시가인정액 평가기간 및 적용순서

【매매등 가액별 평가기간 내 판단기준일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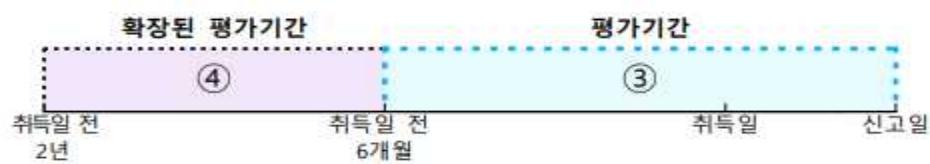
가액유형	판단기준일
매매사례가액	매매계약일
감정가액	가격 산정 기준일 (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도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함)
경공매가액	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

【시가인정액 평가기간 및 적용순서】

1. 매매등 시가인정액의 평가기간



2. '유사 부동산'의 매매등 시가인정액의 평가기간



[2] 매매등 시가인정액의 유형

-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: 그 거래가액.
-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: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. 시가표준액 10억원 이하인 경우 하나의 감정가액

[3] 유사 부동산의 매매등 시가인정액의 적용

◎유사부동산의 범위

- (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)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(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공동주택단지)로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 5% 및 공동주택가격의 차이 5% 이내의 조건